평창군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
검 토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4. 4.12 평창군수(지역도시과장)
나. 회부일자 : 2004. . .
다. 상정일자 : 2004. 4.29 제11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2차 본회의

2. 제 안 이 유

○ 개발잠재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특성을 살리고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전원형 주거단지를 개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관광거점 도시로의 기능수행을 목표로함

3. 주 요 골 자

○ 위 치 :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294-5번지 일원
○ 면 적 : 135,070㎡
○ 용도지역변경 : 자연녹지지역 → 제2종 일반주거지역

4. 검 토 결 과

○ 본 의견제시의 **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**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은 도암면 횡계리 294-5번지 일원 135,070㎡로서 용도는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임.

○ 본 변경결정은 일간지 2회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거치고 2003. 10월경 주민설명회를 거친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.